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85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이개호·정진욱·조계원

이정문 • 이건태 • 부승찬

박범계 • 이언주 • 박수현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갈수록 진전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화로 우리 농어업·농 어촌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교육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으로 도시지역의 교육여건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심화되는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이에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교원·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농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 어촌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농어촌 학교는 농어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 외의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 바.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농어촌 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 공무원 임용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아.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육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교원·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

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 은 제8조에 따른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3.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학생 및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의 연도별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 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 지원 사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 ①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학 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정책의 조정
 - 2. 기본계획의 수립

- 3.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 4.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 5. 그 밖에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어촌 학교 교육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수립
 -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 4. 시·도 교육여건에 적합한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 내용 개선 방안

-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단위 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9조에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설치할 경우인접 면 단위를 병합하여 1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초등학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동학생통학구역 등) ① 농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농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학교 입학 및 전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할 학교에 대하여 공동으로 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학생통학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 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닌 농어촌 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학기 이상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업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 교육감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1개 이상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방과 후 학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및 체육등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 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초등학교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연구 및 성과 분석
-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학교 우수 운영사례 홍보
- 3.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 발·보급
- 4.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교육과정의 연구·개발
-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농어촌 특성에 맞는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농어촌 학교육성 및 교육지원 지역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
-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 ③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교육환경의 개선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학급담당교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 성과를 높이기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2명의 학급담당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18조(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 교직원 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행정업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교직원 특별임용) ①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출신자로 농어촌 학교에 지원하여 장기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자격요건과 임용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농어촌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학교학생을 특별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어촌 인재(이하 "농어촌인재"라 한다)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농어촌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 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농어촌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1. 농어촌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 2. 농어촌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 3. 농어촌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제24조(대학 등의 농어촌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농어촌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 제25조(폐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를 폐교하고 자 할 때에는 폐교 1년 전까지 폐교 사유 등 폐교계획을 공고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교계획은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폐교된 학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

구하고 재개교할 수 있는 여건을 3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세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를 각 삭제한다.